

성남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의안 번호	828
----------	-----

1999년 9월 7일

1. 제안이유

- ◎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집행기관의 조직이 재조정 됨에 따라 성남시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현직제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◎ 제2조 제2호
 - 현행 : 시장의 보조기관중 실·국장, 담당관, 과장급을
 - 개정 : 시장의 보조기관중 국장, 담당관, 과장급으로

3. 검토의견

- ◎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성남시의회에 출석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도 현직제에 맞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됨.